1. 세계 아동복지의 역사

1) 근대 이전의 아동(원시사회~봉건사회)

- 인격적 권리를 지닌 존재보다는 부모의 소유
- 아동=종족보존의 수단

(1)원시사회: 생산력 낮아 공동체사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희생시키기도 함.

(2) 고대사회: 유기

- 종족수단의 보존가치가 있는 건강한 아동의 가치만 인정- 병약한 유아, 장애아에 대한 배제
- 노예아동: "말하는 가축" (아리스토텔레스)
- "아동은 부모가 아닌 폴리스에 속한다" (플라톤)
- 고대 끝날 무렵: 종교 확장→자선사상 발아(기아,고아 등 보호 활동 시작)

(3) 중세봉건사회

- **장원을 중심으로 자급자족 경제단위 확대**
  → 영주-농노의 지배관계 확립, 상품경제 발달

- **공동체 안에서 상호부조적 양육: ex.농노 고아**
- **종교적 자선사업: 각 교구의 자선기관에서 보호**
- **고아: 입양, 교회/수도원, 구빈원에서 양육**
  5~6세→ 도제
- **신분에 의한 계급사회**
  : 귀족-가계의 계승자, 평민-무가치한 생명

- 부(남성 가장) > 가축 > 모 > 아동
  (富)

- 서양사회의 전통적 아동관

: 원죄설에 입각

*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신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기독교 신학의 교리

: 아담의 자손→ 죄악→ 아동은 원죄의 씨앗 → 부모는 가능한 한 아이를 멀리하고 방해물로 취급→ 유모 or 수도원

**** 엄격한 교육&어른의 강압적 자세를 정당화**

- **1601년 영국「구빈법(poor law)」**
  - 아동복지의 기원을 마련
  - 위탁보호제도, 도제(apprentice) 제도 입법화
  - 시설수용아동 수의 감소에 기여
  - 직업능력 습득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
  - 인권무시 및 노동력 착취의 문제(열악한 워크하우스)

- **교구위원&빈민감독관이 치안판사 동의를 얻어 남(~24세), 여(~21세)or 결혼시까지 도제로 보냄.**

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내용

- 빈민의 분류(빈민 억압책의 부분적 포기)
  - **노동무능력빈민: 구빈원, 자선원에 수용 보호.**
  - **노동능력빈민: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.**
  - **아동: 도제.**

- 정부의 구빈책임(교회가 아닌)을 법적으로 천명.
  - **정부(지방정부)의 구빈행정을 위해 지방세 증액, 구빈감독관(1572년 처음 등장. 교구 구빈제도 운영자, 시장이 임명)이 구빈업무와 구빈세 부과, 징수업무 관장. 구빈감독관은 지역유지 겸 무보수 시장인 치안판사가 임명, 감독. 치안판사는 추밀원의 의무환기 편지로 임무 독려.**

2) 근대의 아동

- 장원제도, 농노제도의 붕괴 → 도시인구 유입 증가 → 빈곤, 실업, 주택문제 등 사회문제 출현
- 구빈원(poor house, 救貧院) 중심의 구호활동
  :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아동 사망 빈번

(1)계몽주의와 루소(Rousseau, 1712~1778)

- 계몽주의자: 절대적 신 중심 사고→인간의 이성 중심

"어린이들은 인간으로, 또 자유인으로 태어난다. 그들의 자유는 그들의 것이며 그들 이외의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.(루소)"

- **루소의 아동관&교육관**

1. 성선설
: “만물은 창조자의 손에서 나올 때 선하다”

2. 발달단계론
: 유아기-아동기-청소년기-청년기. 각각 발달단계의 교육과제를 제시
(ex. 어린 시기-소극적 교육을 통한 자연본성 보존
청소년기 이후- 적극적 교육으로 사회성 성장 도모)

3. 자연주의 교육관
: “자연으로 돌아가라” - 인간성 회복

(2) 자본주의 시대의 아동과 오웬

•산업혁명, 기계제 생산양식의 도입으로 인한 아동 노동 증가 (p47)

➔ 이에 반대하는 노동운동

➔ 1833년「공장법」제정을 통해 아동의 노동조건에 대해 개선됨

- 9세 미만 아동의 노동 금지
- 아동노동자의 건강 및 연령 확인 의무화
- 9~13세 아동의 1일 노동시간 제한(9시간)
- 13~18세 아동의 1일 노동시간 제한(12시간)
- 아동의 야간노동 금지
- 매일 2시간의 학교공부 시간 부여 (But, 미래의 노동력으로서의 아동보호적 성격 강함)
- 법률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공장감독관(factory inspector) 임명

◆ Owen(오웬)

- 협동조합(協同組合)의 창시자
-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 강조 (p48)→ 사회환경 개선 강조
- 성격형성학교(1816) 설립 & 아동보호 입법 촉진 운동
- 오웬이 설립한 초기의 노동자를 위한 커뮤니티 사진(p49)

➔ 성인 노동자가 조직화&강화➔그들 자녀(아동 노동)에 대한 문제에 관심

- 18세기 까지 빈곤아동의 교육은 민간의 자선학교가 도맡음.

3) 현대의 아동

- 20세기 '아동의 세기'(엘렌 키, 1849~1926) p50
-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조(p51)
  - 1909년 백악관회의(White House Conference) 개최. 10년마다 개최
  - 가난을 이유로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서는 안 됨
  - 가정의 차선책으로 위탁가정 보호 제공
  - 시설의 경우, 소숙사형태(cottage system)로 운영

- **일반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제도 도입**

  : 노동운동→각종 사회정책 촉진→사회개량활동&사회운동과 연결

  ➔ 아동위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& 국가규모의 책임하에 시행되는 정책 등으로 보편주의 실현/책임소재 명확히

- **대규모 아동시설보다는 소규모 가정시설**

  - 위탁가정 보호 확대

- **아동권리 운동의 등장**

  - 1924 제네바 선언

  - 1959년 UN '아동권리선언' 선포

  - 1979년 세계아동의 해 지정

  - 1989년 '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' 통과

2. 한국 아동복지의 역사

- 서양과 유사
- 고대로부터 아동보호에 대한 장치 有
- 현대에 이르러 아동복지사 역사적 산물로 탄생

✓ 아동(兒童)

- 兒 = 숨구멍 신 囟 + 사람 인 人
- 童 = 무거울 중 重 + 매울 신 辛 / 허물 신(罪)

1) 전근대 한국의 아동구제사업

(1)고려시대

- **전통적 구제대상:** 홀아비/과부, 어리고 부모 없는 사람,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등 (**환과고독:** 홀아비鰥, 적을 寡, 외로울 孤, 홀로 獨)
- **고려시대 성종 13년(994년) 고아에게 10세까지 식량 지급, 원하는 곳에 거주케 함**
  →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구제
- **충목왕 3년(1347년) 해아도감 설치 → 관립영아원**

  (1601 엘리자베스 빈민법, 1884 신빈민법)

(2) 조선시대

- 조선시대 정조 7년(1783년)「자휼전칙(字恤典則)」

→ 전근대시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법령: 국가책임&역할 강조

- 유기 아동의 관가 또는 민가의 수양을 허가(수양 허가제)
- 유기아: 0~3세, 행걸아: 4~10세
- 수양(收養), 유양(乳養,수용보호), 솔양(率養, 고공(관가노비), 노비)
- 진휼청 유접소(留接所), 진장(지방)의 수용보호

출처: 충청수영 진휼청 http://blog.daum.net/hsykms

- **자휼전칙의 주요내용(9)**

1) 나이 및 구제기간
: 유기아(遺棄兒): 0~3세, 행걸아(行乞兒): 4~6, 7~10세
2) 행걸아 구제에 있어서 친족책임의 원칙
3) 행걸아 구제방법
: 수양收養 , 유양乳養(일종의 간이주거시설), 솔양率養 (고공, 노비)
4) 유기아 발견, 보고절차: 주로 진휼청
5) 젖어미 제도: 유기아동, 걸식아동 구제
6) 행걸아, 유기아 입양과 추거(본래의 연고권자가 찾아가는 것)
7) 서비스 절차와 사후감독
8) 의복과 의료구제(진휼청 혜민서)
9) 지방에서의 절차와 재정

2) 근대 한국의 아동복지: 조선말~해방이전

- **종교기관 중심의 고아원 설치**
- 1883(고종) 고종천주교회 고아원
- 외국선교단체, 민간 독지가 등

- **외원 기관에 의한 교육사업**
- 선교사에 의한 학교설립
- 1921 태화사회관-아동복지사업

- **천도교의 아동복지실천**

(1) 19세기 말~대한제국기까지

- 조선 말 고종 25년(1888년) 프랑스 교회가 천주교회 고아원 개설

  :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아동복지시설

- 이필화가 광무 10년(1906년) 경성고아원 설립

  → **근대적 성격의 아동복지사업 시작**

  - 황실하사금, 정부보조금, 기부금으로 운영

(2) 일제강점기 한국의 아동복지

①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산하에 제생원(濟生院) 설립(1911) p58

- 빈곤아동과 맹아들의 교육&자활 도모
- 경성고아원 인수, 국립육아원의 전신
- 맹아부의 경우 현 국립 서울맹학교로 이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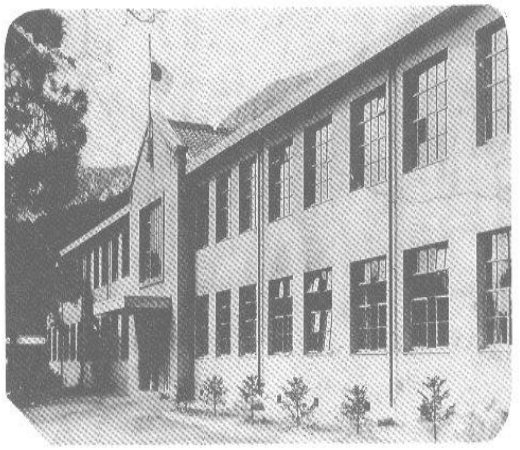

1940년대의 서울맹학교 모습

출처: 제생원 http://blog.daum.net/aroma-may

② 천도교의 소년운동

*** 민간차원의 아동보호 노력**

- **‘어린이’ 이라는 순 한글말 보급**
- **‘어린이날’ 제정(1923년 5월 1일)**
- **‘소년운동선언’ 발표 →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선언(p62)**

➔ 식민지 시대의 교육 계몽 운동으로 전개

*천도교: 조선 후기 1860년에 최제우(崔濟愚)를 교조로 하는 동학(東學)을 1905년 제3대 교주 손병희(孫秉熙)가 천도교로 개칭한 종교.

“양반도 천민도 없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모두 평등하다”

③영흥학교의 설립과 감화구제사업(p63)

- 조선감화령

: 8~18세 고아, 불량 소년 감화시설 설치

(영흥학교-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비행청소년 감화구제시설)

감화원 안산 선감학원
출처: 안산정론신문 김석일기자

④ 태화사회관의 아동보호

-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(감리교, 1921)
- 아동보건(태화진료소)과 사회사업의 전개

⑤ 총독부의 아동애호운동

- 천도교의 소년운동, 기독교의 아동보호사업 등으로 주도권을 잃은 총독부가 1920년 말부터 대대적 아동애호운동 벌임
- 전쟁준비의 성격(일본의 대륙침략)

3) 현대 한국의 아동복지

(1) 광복(1945)~ 1950년대 p66

요보호아동의 증가/ 전쟁고아의 해외입양/ 아동후원사업의 전개

- 국내외 민간단체 중심의 아동구호사업
  - 전체시설 중 70%가 아동시설: 시설중심의 아동복지사업
  - 빈곤계층 아동 대상의 민간, 외원기관에 의존한 사회구호사업(시설아동+거택아동도 포함)
- 1946년 아동노동법규 제정을 통해 아동노동 규제

- 민간자원에 의존한 응급적 시설수용중심의 아동구호 정책
- 국가책임보다는 민간자원과 시설의 재정적 자립을 강조

  → 외원 의존을 불가피하게 만듦
- 외원기관: 기독교아동복리회(한국복지재단), 선명회세계본부(월드비전)

(2) 1960~1970년대 p69

1961.5.16
출처: http://www.nacham.com

◆ 제3공화국- 아동보호 법제화(19개 복지관련 입법)

- 1961 생활보호법
- 1961 고아입양특례버법
- 1961 미성년자보호법 → 1999년 폐지
- 1961 아동복리법 → 1981 아동복지법
- 1970 사회복지사업법

◆ 1970년대 이후 아동복지시설의 감소, 외원기관의 철수 및 사업축소

→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. 국가보조의 증대

◆ 국내입양의 침체로 인해 해외입양은 계속 증가함

◆ 여성 취업인구의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욕구 증대

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(잔여적) 보호대책

(3) 1980년대 이후 p69

✓ **제5공화국** (당시 대통령: 전두환)

- 1981년 4월 13일「아동복지법」제정
  - 요보호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포함
  - 아동상담소의 법정기관 지정
  -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막기 위한 모성 보호
- 탁아(보육) 욕구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탁아시설을 아동복지시설에 추가함(1989년)
- 1990년 3월 방에 갇혀 지내던 남매의 화재사망을 계기로 1991년「영유아보육법」의 제정
- 학대로부터 아동보호: 아동학대고발센터(1979) 개설, 아동학대예방협회(1989), 아동학대신고센터
-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

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 내용이 포함

경비원 아빠 파출부 엄마 일나간새 불

잠긴 지하셋방 남매 질식사

"길 잃어버릴까" 밖에서 자물쇠 채워

탁아소 필요아동 82만명

보사부 92년까지 달동네 1천2백개 계획

별도법 만들어 설립 지원해야

- 영유아보육법: 영유아(영幼兒)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외원기관 중심에서 국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
- 시설수용보호사업의 퇴조
-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서비스,
  국내입양 강화, 가정위탁,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